

# 행정자치부

## 통 보

제 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계획 미수립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책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14년도에 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산림청 ○○○○과-000(2014. 00. 00.)호로 시·도에 통보하였으므로, 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강원도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산림청에서 종합계획을 통보

받고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